

「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」 입안계획서

□ 행정규칙명: 「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」
(관세청 훈령 제2275호, 2023.7.1.)

□ 개정사유

-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화·명확화하여 국민·기업이 납세자보호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절차 개선

□ 주요 개정내용

- 고충민원,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한 계산 기준 마련(§4)
- 민간위원 점검주기 단축 및 점검서식 신설(§12)
- 권리보호요청 대리인 선임절차 및 위임장 서식 신설(§17)
- 고충민원의 보정요구 및 반려절차 신설(§28·§29)
- 소관부서장 등의 고충민원, 권리보호요청 안건 검토기간 확대(§30, §86)
- ‘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례’를 활용한 납세자보호관의 직권처리 허용(§34)
- 시정조치 대상인 고충민원에 납세자보호관이 즉시 시정요구 허용(§34)
- 반복되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의 예외사유 신설(§59)
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및 근거 신설(§64)
-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취하절차 신설(§67, §85)
- 일반행정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신청 허용(§88)
- 업무별 조문을 절차에 맞춰 재구성하고 누락된 서식 개설
- 행정규칙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구조, 표현 등을 정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: “붙임”과 같음

5. 시행일자 : '23. 2. .

6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: 관세청 법무담당관실
- 담당자: 천진영 주무관(☎ 042-481-3298)
- 제출기한: 2024.2.1.(목)
- 제출방법: 이메일(skyc1111@korea.kr) 또는 내부메일